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2)

#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82
----------	------

제출년월일 : 2023. 6. .

제 출 자 : 성남시 장

개정 구분 : 일부개정

개정(제정) 이유

-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운영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위원회 구성 및 임기 관련 규정 정비(안 제13조, 안 제14조)

-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 조문 수정( 둔다→둘 수 있다.)
- 임기 내용 삭제 및 수정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구성하고, 심의 의결한 날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나.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 해촉 내용 삭제
- 부위원장 관련 내용 삭제
- 정기회의 규정 삭제

개정(제정) 조 례 안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성별영향평가결과 : 불임 (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결과 : 불임 (원안동의)

규제심사검토결과 : 불임 (원안동의)

입법예고결과

○ 입법예고 기간: 2023. 4. 10. ~ 2023. 5. 1. (21일간)

○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를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구성하고, 심의·의결한 날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중전의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복 지 정 책 과
입 안 자	복지정책과장	김 순 신
	복지기획팀장	이 선 희
	주 무 관 ( 연 락 처 )	김 진 하 (729-283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제15조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1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

제1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삭제>

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 ⑤ (생략)

제19조 ~ 제21조 (생략)

② ~ ④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8조 ~ 제20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 【관계 법령 발췌서】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성남026			
정책명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김진하	전화번호	031-729-2834
성별영향평가가서 제출날짜	2023년 3월 3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위원회 구성 및 임기 관련 규정 정비: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 조문 수정, 임기 내용 삭제 및 수정 -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해촉 내용 삭제, 부위원장 관련 내용 삭제, 정기회의 규정 삭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4월 03일				
<b>성남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b> (담당자/연락번호 : 이승민/031-729-2925)				
복지정책과장 귀하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평가담당	감 사 관	지방행정주사보	조 혜 미
입안주무부서	복지정책과	통보(조치)일	2023. 4. 3.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원안동의		

# 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관 리 번 호	2023-28 경기성남		
조례규칙명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소 관 부 서	기 관 명	경기도 성남시	
	부 서 명	복지정책과(복지기획팀)	
	담당자명	김진하	전화번호 729-2834
규제심사요청서 제출날짜	2023년 3월 31일		
검 토 내 용	<p>○ 개정조례: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p> <p>○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등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p>		
종합 검토 의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 신설 · 강화되는 내용이 없는바, 원안 동의함.</p> <p>○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p>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심사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4월 3일

법 무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리나/031-729-8843)

복지정책과장 귀하